

발행인: 서울특별시청 이 상 배
편집인: 공 보 관 이 상 진
전 화: 731-8111~3
인쇄: 한국컴퓨터산업(인쇄)주식회사
전 화: 273-8111~3

시보

차 례

번호	제목	페이지
제 2944 호	서울특별시합동주택개발조례	2
제 2945 호	서울특별시외출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	2
제 2946 호	서울특별시합동합계육식설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	7
제 2947 호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	7

〈이면계속〉

[illegible]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인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물륙별시

“전다가 농민경제 뛰어서 다시잡자”

조 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2. 7. 22

서울특별시장 이상배 ㉠

●서울특별시조례제2944호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급수구역) 본문 중 “시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로 한다.

본문을 ①항으로 하고 ②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천재지변 기타 비상시 긴급히 급수를 한 때에는 다음 회기에 시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권리위무의 승계) 본문 중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를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는 3월의 체납분까지만 이를 승계한다”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25조(급수량의 계량조정) ④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정수처분) ①항 13호를 삭제한다.

제34조(과태료) ⑤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급수를 도용한 자는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제40조(양수기의 점검 등 위탁) ②항 중 1,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외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2. 7. 22

서울특별시장 이상배 ㉡

●서울특별시조례제2945호

서울특별시외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외용소방대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강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법 제86조 내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외용소방대(이하 “외소대”라 한다)의 설치, 명칭, 구역,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외소대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방서장이 소방서별로 설치한다.

② 소방서에는 부녀외용소방대(이하 “부녀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외소대(부녀대제외)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산하에 지역외용소방대(이하 “지역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명칭) ① 외소대의 명칭은 “외용소방대” 앞에 당해 외소대가 설치된 소방서의 명칭을 붙인다.

② 부녀대의 명칭은 “부녀외용소방대” 앞에 당해 외소대가 설치된 소방서의 명칭을 붙인다.

③ 지역대의 명칭은 “지역외용소방대” 앞에 당해 외소대가 설치된 소방서의 명칭과 함께 동, 구역, 기타 상징명을 붙인다.

제4조(대의 표지) ① 대의 표지는 대의 기와 판서표지로 한다.

② 대의 표지의 제식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조직 및 정원

제5조(임용기준) 의소대는(부녀대, 지역대를 포함한다)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의소대에 지원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호 사항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1. 관할구역 내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민
2.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민
3. 신망이 두터우며, 의용봉공정신이 강한 주민

제6조(조직) ① 의소대 및 부녀대에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과 약간명의 고문을 둔다.

② 지역대에는 지역대장 1명을 둔다.

③ 의소대(부녀대 및 지역대를 포함한다)의 하부조직, 업무분장 및 정원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대장 등의 임무) ① 대장(의소대 및 부녀대를 말한다)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대의 업무를 통할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리한다.

③ 지역대장은 대장의 명을 받아 지역대의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조(대원의 임용) ① 의소대와 부녀대의 대장, 부대장 및 지역대장은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용한다.

② 대원은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소방서장이 임용한다.

③ 회계 및 물품출납 담당 대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제정 보증조례"를 준용한다.

④ 기타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대장 등의 임기) 대장 및 부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고문의 위촉) 고문은 지역사회의 소방안전과 의소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한 주민으로서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소방서장이 위촉한다.

제11조(해임사유) 대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해임하여야 한다.

1. 소제불명이 된 경우
2.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대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4. 직무를 내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소방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제12조(대원의 신분증명) ① 대원은 업무수행시 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은 의소대장(부녀대장 포함)의 경우 시장이, 대원은 관할소방서장이 발급한다.

③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발급 및 폐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복무 및 교육훈련

제13조(복무의무) ① 대원은 비상근으로 소집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화재발생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대상물을 검사하도록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금지행위) 대원은 각 의소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기타 단체의 정외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의소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5조(복제) ① 대원(부녀대 및 지역대를 포함한다)은 소방업무수행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복제는 시예산으로 조제하여 대원에게 지급한다.

③ 복제의 제식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복무감독) 소방서장은 당해 소방서의 소대원(부녀대를 포함한다)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17조(점열) ① 소방서장은 의소대 운영과 업무수행 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점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소대의 점열시기,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교육 및 훈련) 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대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월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 장 대의 경비, 수당 및 보상금

제19조(기본경비) 대원의 수당, 대원에 대한 부상 및 사망보조금, 의소대의 장비관리비, 기타 의소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는 시예산에 편성한다.

제20조(출동수당) ①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교육훈련 및 홍보 등 포함)된 대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은 1인 1회에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호봉 보수월액의 30으로 나눈 금액의 60%로 한다(단, 백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21조(활동비 보조 등) ① 소방서장은 대원이 의소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필요경비(여비 등)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역활동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재해보상의 종류와 기준) ① 대원이 소방업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요양 보상
2. 장해 보상
3. 장제 보상
4. 유족 보상

제23조(요양보상) ① 대원이 소방작업으로 인하여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을 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진료, 치료, 수습, 약제, 입원비 등 요양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요양비는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4호봉 보수연액의 80%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근속연수의 계산은 최초임용일로부터 기산하되,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년으로 간주한다.

제24조(장해보상) ① 대원이 소방작업으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있을 경우에는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신체장해의 등급별 장해보상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신체장해의 등급별 장해보상금은 별표 1-1과 같다. 단, 신체장해가 병발하였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

제25조(장제보상) 대원이 소방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4호봉의 보수월액 3월분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근속연수의 계산은 제23조와 같다.

제26조(유족보상) 대원이 소방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4호봉의 보수연액의 3년분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근속

	부 칙
연수의 재산은 제23조와 같다. 제27조(재해보상 청구) ① 제22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보상비는 재해를 입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소방서장을 경유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6 장 의용소방대 연합회 등 제28조(의용소방대연합회) ① 의소대 상호간의 소방업무 정보교환, 대원의 복지향상과 친목도모 등 지역 소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연합회의 임무)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소대·친목 도모 2. 의소대간의 협력 강화 3. 지역행정(소방 및 일반) 협조 지원 제30조(연합회의 경비지원) ① 시장은 시 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 연합회가 시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원활동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관할구역 내의 업무지원 등) 소방서장은 관할구역 내의 의소대(부녀대 포함)에 대하여 활동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참여하고, 자원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32조(권한위임) 시장은 의소대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대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거 임용된 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대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거 임용된 대장의 임기는 계속되며,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 (대원의 신분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거 발급된 대원의 신분증명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새로이 발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별표 1〉 신체장애등급표	
등 급	신 체 장 해
1	1. 양안이 실명된 자 2. 양상지의 완관절 이상이 함께 절단된 자 3. 양하지의 족관절 이상이 함께 절단된 자 4.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자 5. 편 상지 중 완관절 이상과 편 하지의 족관절 이상이 함께 절단된 자 6. 흉복부 또는 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아 중신토록 취업능력을 잃은 자
2	1. 편안이 실명된 자 또는 양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2. 편 상지 중 완관절 이상이 절단된 자 3. 편 하지 중 족관절 이상이 절단된 자 4. 생식기의 결손으로 인하여 생식불능을 잃은 자 5. 흉복부 또는 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은 것이 현저한 자 6.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은 것이 현저한 자
3	1.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은 것이 현저한 자 2. 외기도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은 것이 현저한 자 또는 안면에 심한 추행을 일으킨 자 3. 고막의 결손으로 인하여 청력이 완전히 상실된 자 4. 척추에 심한 기형을 일으켰거나 척추의 손상으로 인하여 운동의 장애를 받은 것이 현저한 자 5. 양모지 혹은 수지 중 5지 이상을 잃은 자 6. 편 상지 또는 편 하지의 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잃은 자
4	전 각 등급 이외의 신체장애자
〈별표 1-1〉 신체장애 등급별 장애 보상표	
등 급	보 상 액
제 1급	지방소방사 4호봉 보수연액 80%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제 2급	" 75%의 " "
제 3급	" 70%의 " "
제 4급	" 65%의 " "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
종합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2. 7. 22

서울특별시장 이상배 ㉠

●서울특별시조례제2946호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공공요급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서울특별시의회
의 의결을 얻어”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 중 제2조제1
항 각호의 체육센터에 관한 시장의 권한
은 이를 그 소재지 관할구청장에게 위임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제외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중전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이 조례
에 의한 사용료로 본다.

③(운영중인 체육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중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
중인 체육센터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
까지는 중전의 규정에 의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도
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1992. 7. 22

서울특별시장 이상배 ㉠

●서울특별시조례제2947호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8조 및”을 삭
제한다.

제8조제1항 중 “국무총리”를 “내무부장
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